



# 한국 IPG Information

발행 : 2011 년 2 월

한국 IPG 사무국(JETRO 서울센터)

## 목차

### < 한국 IPG 의 활동 >

- 인천공항 세관청사에 국경관리물품홍보관 개관 1~2 p
- 알림 3 p
- SJC 건의에 대한 회답 4~5 p

### < IP 를 알아 >

- 한국 IP 뉴스 6 p
- 「신·지재 최전선은 지금」  
- 국산 IP 를 지키는  
한국의 거대자본 - 7 p
- 만약 사원이 발명을 한다면 - 8 p

한국 IPG 회원 등록  
www.jetro-ipr.or.kr/  
admin/files/IPG\_mem.pdf

한국 IPG 는 일본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회비는 없습니다.

## 한국 IPG 사무국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센터 지재팀

전화 / 02-3210-0195  
e-mail / jetroiprseoul@gmail.com

榎本吉孝 (에노모토·요시타카)  
曹 恩実 (조은실)  
趙 乾東 (조건동)  
池崎麻理絵 (이케자키·마리에)

## 한국 IPG 의 활동

### ● 인천공항 세관청사에 국경관리물품홍보관 개관



한국 IPG 에서 모집한 결과, 5 개의 일본기업에서 전시품(모방품·진품)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협조 감사 드립니다.

【전시기간】 2011 년 1 월 21 일~2011 년 12 월 31 일 (예정)

【전시장소】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1 층 국경관리물품홍보관

【지재권침해 전시품목】 가방, 지갑, 핸드백, 구두 등, 일본으로부터는  
오일 필터, 프린터 카트리지, 완구 등

➡ 다음 페이지에 관련기사

### 사무국 소식

2011 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한국 IPG 여러분의 많은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올해는 토끼의 해입니다. 한국 IPG 도 토끼처럼 열심히 노력하여 발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 IPG·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내에 모방품을 전시하였습니다.



한국관세청에서는 해외에서 반입되는 불법 식품, 의약품, 총포, 도검류, 모방품,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대상물품 등,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물품과 사회안전을 저해하는 물품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한 불법물품을 전시하는 「국경관리물품홍보관」이 인천공항세관의 수출입통관청사 로비에 설치되어, 1 월 21 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이 「국경관리물품홍보관」은 6 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380 여종의 물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이 이런 불법물품을 해외에서 무분별하게 구입하여 세관에서 적발되는 경우, 또는 인터넷쇼핑으로 구입하여 해외로부터 우송시에 적발되는 경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국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며 피해사례를 알림으로써, 경계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관세청은 이런 홍보관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는 인천공항세관의 건물내에 있는 수출입통관청사 로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과 서울역 등에도 설치할 계획이며, 일반여행객도 자주 볼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품 수집은 한국세관 및 그 산하단체와 한국 IPG 가 협력하여 진행하였으며, 한국 IPG 에서는 일본기업의 전시품 기증을 모집하였습니다. 협조해 주신 5 개의 일본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캐논 (토너 카트리지와 카메라용 전지), 리코(토너 카트리지), 요넥스(배드민턴 라켓), 타지마 디자인(테이프 줄자), 코마츠(오일 카트리지)

협조 감사 드립니다.



모방품을 전시하는 것은 상품의 진위에 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모방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업의 홍보효과도 기대가 되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 3월 3일(목) 서울세관 단속직원을 위한 「모방품 진위판정 세미나」를 개최

세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관직원을 위한 진위판정 세미나」에서는 기업의 담당자가 세관의 단속직원에게 자사상품의 진위판정 방법을 전수함으로써, 세관에서의 모방품 단속 효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 IPG 에서는 오는 3월 3일(목)에 서울세관의 단속직원을 위한 동세미나를 실시합니다. (일본경제산업성의 보조사업).

- 【장소】 대한관세사회·회의실 (서울본부 세관직원 대상)
- 【일정개요】 2011년 3월 3일 오후(1개사당 50분 예정:질의응답 시간을 포함)
- 【정원】 5개사 (모집은 마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한국 IPG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2010년도판·각종 매뉴얼 등의 안내 !!

JETRO 에서는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처에서의 지적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각종 매뉴얼 등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특허청 위탁사업). 이번에 2010년도판이 완성되었으니, 배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신청접수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에 관한 <2010년도판 매뉴얼류> 일람

- (1) 모방대책 매뉴얼 한국편
- (2) 한국 라이선스 매뉴얼
- (3) 한국의 저작권침해 판례·사례집
- (4) 한국지적재산정보검색 핸드북
- (5) 한국지적재산정책 레포트

책자값·송료는 무료



2. 신청 접수처 : 발송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에 계신 분) URL:<https://www.jetro.go.jp/form/fm/erb/manual2010>  
↓ 「한국지적재산정보검색 핸드북」의 신청 접수처 (일본국내) ↓  
URL:<https://www.jetro.go.jp/form/fm/erb/kiprisl2010>
- (한국에 계신 분) URL:[http://renew.jetro-ipr.or.kr/sec\\_admin/files/siryopdf](http://renew.jetro-ipr.or.kr/sec_admin/files/siryopdf)

◆ 한국특허청 「심사지침서 -특허·실용신안-」 (JETRO 가역) 을 배부

한국특허청이 발간하고 있는 <심사지침서 -특허·실용신안- > (전 1,061 페이지) 를 일본어로 번역하였습니다(JETRO 가역). 한국 IPG 에서는 한국에서의 일본기업의 지재보호를 위한 그룹활동의 일환으로 일본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일본어판을 제본하여 한국 IPG 회원 (일본국내의 한국지재네트웍 회원을 포함)중에 희망하는 분께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URL 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월 28일(월)**까지 한국 IPG 사무국 앞으로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는 각기업에 1권(일본국내 1권, 한국국내 1권, 합계 2권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신청서와 함께 회원등록서를 동사무국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값·송료  
무료

- 신청서 URL [http://renew.jetro-ipr.or.kr/sec\\_admin/files/sinsa.docx](http://renew.jetro-ipr.or.kr/sec_admin/files/sinsa.docx)
- 한국지재네트웍등록(무료) [http://www.jetro.go.jp/theme/ip/iippf/ipg\\_kr.html](http://www.jetro.go.jp/theme/ip/iippf/ipg_kr.html)
- 한국 IPG 회원등록(무료) [http://www.jetro-ipr.or.kr/admin/files/IPG\\_mem.pdf](http://www.jetro-ipr.or.kr/admin/files/IPG_mem.pdf)

# 지재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한국정부의 회답

SJC 가 작년 8 월 24 일에 한국정부에 제출한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SJC 건의사항」에 대해, 한국정부로부터 문서에 의한 회답이 있었습니다. 총 30 항목의 건의사항 중, 지재권분야는 19 항목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회답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선되는 사항	
요망사항	한국정부의 답변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일본 만화와 TV 프로그램의 불법 업로드)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	개인 서버로 인한 침해단속을 강화하며, 법률을 개정하여 온라인상의 침해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체디자인 출원 후라도 부분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등록요건)	관련규정에 대해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품과 수상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예: DVD 플레이어)도 화면디자인을 보호해 달라	국제분류(로카르노분류)의 도입과 법률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로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웹사이트에서의 지적재산정보의 영어판 제공서비스에서 정보의 일부가 영어로 되어 있지 않다	해외유저를 위한 영문 사이트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세관에서의 국경조치(모방품 단속)의 강화	국경조치의 대상을 특허 · 디자인 · 품종보호 · 지리적표시의 침해물품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관의 단속직원에 대해, 자사상품의 진위판정 방법을 알리는 기회가 필요	관세청 산하의 협회 회원기업 이외에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작년 12 월부터 실시)
모방품의 규제 · 단속 강화, 소비자의 지적재산 마인드의 향상	상표권특별경찰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모방품 단속 시스템을 운용하며, 인식향상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용가능」이란 회답중, 현재 대응가능한 것으로 회답한 사항	
결합상표 「A + B」의 심사 (「A」와의 유사판정)에 대한 심사기준의 운용의 재검토	현행 심사기준에 의한 운용으로 충분히 대응가능합니다.
해외의 저명상표에 대해, 한국에서 부적절한 등록이 되지 않도록 판단기준의 적정화	현재의 판단기준으로도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고 있음을 증명하면 대응가능합니다.
재판에서의 특허침해 입증을 용이하게(소송 제기전의 증거수집, 영업비밀을 포함한 문서 제출 등)	기소전의 증거수집은 현행의 민사소송법으로 대응가능. 영업비밀의 누설방지는 2008 년에 법안으로 제출

## < 장기검토와 답변된 사항 >

- ㉠ 한국을 겨냥한 TV 프로그램 · 극장판영화 라이선스 비즈니스의 문제점(시장개방)
- ㉠ 특허출원 절차 개선(응답기간 연장, 복수의 멀티클레임 허용, 분할기간 확대)
- ㉠ 특허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 자체 보호
- ㉠ 외국어출원(영어출원) 도입, PCT 출원의 보정범위 확대
- ㉠ 무효심판에서의 청구인 적격 제한 철폐
- ㉠ 간접침해규정 확충

## 장기검토, 수용곤란

### <수용곤란 사항>

- ㉠ 한국에서의 일본 CD 판매에 관한 절차개선
- ㉠ 상표등록요건 개선(복수의 상표등록을 모아, 추후에 포괄적인 지정상품으로 출원)
- ㉠ 상표출원의 선후원에 관한 규정적용의 판단시기(출원시⇒결정시)
- ㉠ 특허권 등의 유 · 무효를 법원에서 판단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



## 개선사항의 보충

### ●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에 대응

한국의 인터넷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저작권침해는, 과거 1990년대말에 IT 붐을 이끌어낸 김대중 정권시대에, 브로드밴드의 보급으로 인해, 저작권침해를 안이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정보는 공짜」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버렸다고 지적되고 있다. 끝이 없는 침해문제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 한국정부는 오늘날까지 법제도와 정책을 정비해 왔지만, 현재 P2P 사이트와 개인 블로그 등을 이용한 저작권침해가 새롭게 나타나, 정부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JC 건의사항에서는, 일본출판사의 만화가 잡지에서 스캔되어 불법으로 업로드 되며, 자막이 삽입된 일본의 TV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업로드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프로바이더(ISP) 경우의 삭제요청은 개선되고 있지만, 개인 서버로 인한 침해에 대해서는 유효한 수단이 적다는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묻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등록을 필요로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회답하였습니다.

「무궁무진한 공짜 콘텐츠」에 적용된 유저의 수요를 어떻게 끊느냐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SJC 건의사항에서는, 일본의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2,000만엔의 배상(판결에 있어서는 본래의 배상액은 1억 8,000만엔이라는 부언설명이 있었음)이 확정된 이후, 개인 서버에서의 저작권침해사건은 전무해졌다고 설명하며, 한국에서의 대응강화를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 ● 동일인이라면 부분디자인을 추후에 출원 가능

한국에서는 상품전체디자인(예:자전거)을 출원한 후에, 그 부분과 부품의 디자인(예:핸들)을 출원하면 부분과 부품의 디자인은 선출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후출원으로 간주되어 거절되며, 동일 출원인이라도 등록되지 않습니다. 디자인개발의 실태로서 제품전체로부터 개개의 부품 순으로 디자인을 결정해 가는 방법도 있으며, 히트친 제품디자인의 독자성이 높은 부분만을 모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분디자인과 부품디자인의 권리취득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SJC 건의사항에서는 이 문제를 2009년부터 거론하며 개선을 요청해 왔습니다.

한국특허청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2010년 7월 7일에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동일인이 출원한 경우, 전체디자인, 부분디자인의 순으로 출원할 수 있게 됩니다.

### ● 화면디자인의 보호확대

「화면디자인」이란, 예를들어 DVD 플레이어의 경우 TV 화면에 표시되는 조작화면에 대한 디자인이 해당되며,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보호대상 물품을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화면이 있는 TV와 모니터 등(수상기)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DVD 플레이어 자체는 '화면디자인'을 표시하는 화면이 없다). 이런 운용은 화면디자인을 해당물품(DVD 플레이어)의 일부로 창작하고 있는 기업의 제품개발의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SJC 건의사항에서는 이 문제를 2009년부터 거론하며, 개선을 요청해 왔습니다.

한국특허청은 한국의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취해 왔습니다만, 정보화·국제화에 따라 51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적인 로카르노분류체계를 도입하도록 법률개정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디자인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은 로카르노분류에서 정하는 물품으로 확대되어, 로카르노분류의 제 14류에 속하는 「화면다스플레이 및 아이콘」은 독립된 물품으로서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SJC 건의사항과 한국정부의 회답 전문은 SJC 홈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URL: <http://www.sjchp.co.kr/sjc2/report/file/20101215.pdf>



## 한국 IP 뉴스

**● 중국내에서의 짝퉁 휴대전화의 출하량은 2012년에는 하락할까. 자사 브랜드화가 진행되고 있는 듯 .**  
 시장조사업자 iSuppli(아이서플라이)에 의하면, 불법제조 된 휴대전화(짝퉁 휴대전화)의 중국내수(출하량)은 오는 2012 년경에는 하락세로 전환되며,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중국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제조원가가 한계에 달한 것이 그 이유. 반면, 타이·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파키스탄 등의 아시아지역의 신흥시장에서의 판매 출하량은 2009 년의 1억 1,020 만대에서 2010년에는 1억 5,440 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다른 보도에서는 한국산 휴대전화와 TV·가전제품을 모방한 중국기업이 짝퉁의 레벨을 넘어 자사브랜드화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 위조상품의 공격에 무방비인 한국 중소기업의 실태**  
 한국특허청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536 개사중의 144 개사가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으며, 위조상품이 정규상품의 판매량의 50%이상인 되는 중소기업도 33.4%(48 개사)에 달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144 개사중 101 개사는 자사의 제품이 공개유통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는(일반 소비자가 용이하게 위조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태를 파악하고 있지만, 그중 58 개사만이 피해발생의 유무를 조사하고, 46 개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중소기업의 대응이 소극적이다.

**● 한국의 대표적인 캐릭터 상위 40 건중, 디자인등록은 6 건에 불과**  
 「대한민국의 대표적 캐릭터 100」(서울산업통상진흥원,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공동선정)의 부문별 상위 10 건의 캐릭터에 대해, 한국특허청이 등록상황을 분석한 결과,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등록이 각각 45%와 1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캐릭터의 디자인등록이 저조한 이유는 현행법이 캐릭터와 그래픽심볼 등을 디자인등록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되는 무수한 상품을 하나하나 디자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영세한 캐릭터관련업자에게 비용부담이 크다고 분석. 한국특허청은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 한국에서의 특허수수료 납부가 편리해 지고, 부담도 감소**  
 지금까지 개인에게 한정되어 있던 특허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올해 1 월부터 중소기업으로 확대되었으며, 결제수수료도 필요 없어졌다. 중소기업은 은행창구, 구좌송금, 신용카드로의 납부가 가능해져, 올해 시행된 2~3 개월 무이자 분할납부를 이용하면, 납부부담이 한층 더 줄어들 것이다. 4 월부터는 4 년차 이상의 특허등록료를 3 년분이상 일괄납부시 5%가 할인이 된다.  
 또한, 올해부터 심사청구시에 심사유예를 청구하면, 심사청구료도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 「저작권관리사」 인증제도를 도입**  
 유비쿼터스 미디어콘텐츠 연합과 온라인산업진흥회는 「저작권관리사」의 자격인증시험제도의 도입과 그 양성교육을 결정하였다. 저작권관리사란, 콘텐츠의 저작물을 제작한 저작자의 권리와 그에 동반되는 권리를 보호하여, 공정한 이용을 추진하는 전문직업인으로, 창작자와 사업자, 소비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창작자의 권리보호 및 저작권 중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미래의 유망한 직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자격」이라고 동연합은 설명하고 있다.

**● 브랜드력 강화. (사)한국상표협회가 발족**  
 상표·브랜드관련 교육사업,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 전문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및 개인상표권자의 브랜드 경영지원의 선도를 목적으로, 한국상표협회를 창립하였다. 한국특허청은 이번 협회의 창립을 계기로 상표·브랜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며, 협회가 경쟁력 있는 기업 브랜드의 구축에 있어서 발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자세한 기사 및 그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지적재산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URL : [www.jetro-ipr.or.kr/news/news02.asp](http://www.jetro-ipr.or.kr/news/news02.asp)



## 국산IP를 지키는 한국의 거대자본

File No.27

정부예산 2,000 억원 (약 146 억엔), 민간출자 3,000 억원 총 5,000 억원 규모(2015 년까지의 예정금액)로, 한국의 첫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이 탄생하였다. 「창의자본」이란, 지적재산을 매입하여 그 부가가치를 높인 후, 사업화를 원하는 기업에 라이선스 등으로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을 말한다.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GDP 대비 연구개발(R&D)비에서 세계 1 위이며, 국제특허출원 건수로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은 4 위이다.

미국특허등록 건수에서는, 기업별로 삼성전자가 IBM 에 이어 2 위이다. 특허출원 대국을 자랑하는 한국이 민관합동으로 창의자본을 창설하는 목표, 그것은 지적재산을 활용한 「강국」의 지위이다.

한국에서 창의자본이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특허활용률」의 저하이다. 각국의 특허활용률을 보면, 미국이 45%, 일본이 54%, 독일이 53%인 것에 반해 한국은 36%로 낮아 많은 권리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의 유명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해외 특허관리회사가 싸게 구입하여, 그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 대기업에 거액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정부는 작년 7 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지식재산강국실현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여, 그 전략의 하나로 「창의자본의 창조 및 대규모지식재산관리회사의 설립」의 추진을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민관공동참가형의 창의자본에 의해 국내외의 우수한 지적재산을 조기에 발굴·확보하여 성공할 수 있는 IP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로 하고, 올해 9 월 16 일 첫번째 한국의 창의자본주식회사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가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사

기술의 융·복합화가 진행되어 경쟁력 있는 제품의 개발에는 여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특허가 필요하다. 동사는 장래 시장을 주도할 제품을 상정하여 앞으로 필요할 특허를 매입해 특허 패키징한 후에 사업화를 도모하는 기업에 제안하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통신관련분야에서 해외의 특허권 지분을 확보하여,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라이선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개발에 고심하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와 협력해 스마트정보기술(IT) 제품 등의 지적권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요한 지적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대기업의 특허침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발명가와

중소기업으로부터 지적권을 위탁받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IP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권을 매입하는 전통적인 창의자본의 비즈니스 모델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서, 전략분야의 핵심이 될 특허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관련특허와 패키징하여 강력한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IP 엔지니어링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연구개발의 부산물로서 특허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특허를 얻기 위해 대학 등의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하여, 장래에 필요한 특허를 만들어 내는 시도이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IP 를 창조하는 것은, 대학 등의 연구성과와 경제·산업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동사의 역할은 창의자본에 의한 ◇국가지적재산의 창출·이전·활용 촉진, ◇정부가 추진하는 IP 인큐베이션사업 수행, ◇과학기술 연구자의 창의노력을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IP 비즈니스 산업 육성, ◇해외 특허피물로부터 국내기업 보호 및 지적재산의 해외로의 유출방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특허피물의 위험도

공공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기도 한 동사가 창의자본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대부분은 중소기업)을 공격하는, 다시말해 새로운 특허피물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존재자체에 대한 논의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또한, 지적권면에서 약자인 개인발명가와 중소기업의 IP 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발명가와 중소기업이 자신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로열티 수입을 얻은 후 이를 배분하는 외국의 특허피물을 이용하는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는 최근 한국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노력 및 동반성장과 관련해, 한국형 창의자본 주식회사인 동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자 : 한국 IPG 협력회원>

YOUME 특허법인 이원일 변리사

1970 년생.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재학중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 1997 년부터 YOUME 특허법인에서 근무. 현재 파트너 변리사, IP 비즈니스본부장 겸 일본안건 통괄책임자.

(감수 : 일본무역진흥기구 체트로 서울센터 부소장 에노모토 요시타카)

## 만약 사원이 발명을 한다면

File No.28

전 LG 전자의 연구원 2 명이 재직중에 개발한 DVD 플레이어 관련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회사에 소송을 건 사건에서, 한국의 재판소는 2005 년에 3 억 8,000 만원(약 2,800 만엔)의 지불을 명하였다. 전 현대전자(전 하이닉스반도체)의 연구원 5 명도 영상데이터 압축방법의 하나인 MPEG 관련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여, 2008 년에 5 억 2,200 만원의 지불을 회사(사업을 인수한 하이닉스의 1 사)에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직무발명」의 인식은 퍼져가고 있다. 사원이 발명을 했을 경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회사로서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사원이 업무로 발명 등의 아이디어를 창출하였을 경우,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회사에 있지 않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을 한 자」(종업원) 또는 그 승계인이라고 특허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사원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구두 또는 서면)에 의해 양보받지 않는 한, 회사명으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원의 발명을 특허출원할 경우마다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미리 고용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회사로 발명을 양도하기로 하는 규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예약승계). 그러나, 한국의 중소기업과 외국자본의 중소기업 중에는 아직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사례가 종종 보입니다. 최근 컴퓨터의 보급으로 기획개발이 용이해져, 비즈니스 모델관련 특허도 등장하는 등,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사원도 특허에 연결될만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영업판매가 중심인 일본기업도 관련규정에 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로의 양도를 미리 규정해 둘 수 있는 것은 「직무발명」에 한해 가능하며, 사원의 개인적인 발명에 대해 양도를 받을 것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직무발명이란, 사원이 해당 직무에 관한 발명을 했을 경우, 그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사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입니다(한국의 발명진흥법 제 2 조). 예를들어, 자동차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관리방법을 발명한 경우는 직무발명이 됩니다.

## 한국에 있는 일계 법인에서의 지적재산 권리

제조라인에서의 조그만 개선제안 등도 기업의 중요한 지적재산이므로, 이러한 기술정보가 사외에 유출되기 전에 회사가 파악하고, 노하우로 비밀관리 하며, 특허출원하여 보호·활용하는 등, 현장에서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발명의 예약승계를 정해 놓은 것 이외에도 ◇아이디어가 생각난 경우에는 회사에 보고하는 의무를 정해 놓으며, ◇아이디어가 직무발명인지 자유발명인지를 판단하여, 직무발명일 경우에는 비밀관리를 할지 특허로 출원을 할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정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앞의 2 개의 사건과 같이, 회사가 사원의 발명을 양도받은 경우, 사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동법제 15 조), 회사가 발명을 양도받았을 때나 특허출원을 했을 때, 특허로 등록되었을 때의 사원에게에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정해 놓고, 특허발명을 타기업에 라이선싱하는 등의 특별한 수익을 얻은 경우는 특히 보상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건사원의 경우, 과건사원의 사용자는 과건회사라는 견해도 있으며, 직무발명의 예약승계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한국에서의 판례는 아직 없기 때문에, 과건사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과건사원 및 과건회사와의 삼자계약으로 과건사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회사가 가짐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고용계약에 직무발명의 예약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종업원이 회사 몰래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특허로 등록되면 사원이 적법한 특허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회사는 사원에게 급여와 연구비, 연구자재 등을 제공하여 직무발명의 창출에 공헌하였기 때문에, 그런 경우 동법은 특허권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을 회사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한 특허제품의 제조판매가 중지될 염려는 없습니다.

<해설자: 한국 IPG 협력회원>  
 특허법인무한 천성진 변리사  
 1971 년생. 1994 년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  
 1995 년에서울대 공과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졸업.  
 1915 년~1999 년 삼성전자에 근무.  
 2000 년~2002 년에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  
 2002 년에 특허법인무한을 공동설립.  
 현재 APAA 한국협회 이사.  
 (감수: 일본무역진흥기구 제트로 서울센터  
 부소장 에노모토 요시타카)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연재>>

